

# 2025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합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

2025. 9. 16.
기획재경위원회

## 1. 검토과정

- 안건명: 2025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합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
- 제출자: 달서구청장(기획전략과)
- 제출일자: 2025. 9. 3.(수)
- 회부일자: 2025. 9. 3.(수)
- 상정 및 의결: 제31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(2025. 9. 16.)

## 2. 제안이유
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및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에 근거한 행안부의 예수예탁 활용 가능 검토 결과에 따라,
- 회계·기금간 여유재원을 확보하여 신속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자금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 회복에 대응하고자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에 따라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함.

## 3. 주요내용

-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됨.
- 이 중 통합계정은 주차장특별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예수금 수입을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변경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추진에 사용할 계획이고,
- 향후 재정여건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환할 계획임.

#### 4. 관계법령

-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(회계·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·예탁)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및 제16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·운영)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#### 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합계정)은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에 따라 회계·기금 간 여유재원을 통합 관리하여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운용하고 있음.
- 이번 2025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합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,

〈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합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〉

(단위: 천원)

구 분	2024년도말 조성액(a)	2025년도 기금운용계획			2025년도말 조성액 (e=d+a)
		수입(b)	지출(c)	증감(d=b-c)	
기 정	505,192	4,054,477	0	4,054,477	4,559,669
변 경	505,192	11,554,477	0	11,554,477	12,059,669
증 감	0	7,500,000	0	7,500,000	7,500,000

※ 수입⑥: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(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원금 회수 제외)

※ 지출⑦: 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(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)

-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의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에 따라 여유재원인 주차장특별회계 40억원과 재난관리기금 35억원을 예수금 수입으로 증액 편성하고, 그 전액을 일반회계로 예탁하여 신속하게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필요한 구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- 이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회계·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과 기금 설치 및 운용 목적에 따른 검토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합계정)에서 일반회계로 예탁하는 75억원은 주차장특별회계와 재난관리기금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상환하여야 할 것이며, 위원회에서는 우리 구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이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## **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특이사항 없음**

## **7. 심사결과: 원안가결**